

##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제안설명

의안 번호	3294
----------	------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독신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의 필요성 및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유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 가운데, 자연과 하나되는 산림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, 실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체계적,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.
- 이에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성에 기반한 산림 교육 활성화 등의 지원을 위해 산림교육 지원인력 및 예산 지원 범위 명시 등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, 내실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

- 이에 안 제3조의 경우, 시장의 산림교육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책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- 안 제4조의 경우,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,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, 추진 방향, 전문가 체계적 육성 및 지원, 기반 구축 등 운영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,
- 안 제5조의 경우,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,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사업추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-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 경우, 산림교육의 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시하여, 관련 법령 하에, 학교, 어린이집, 유치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